

주주님께

제 9 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통지서

주주님의 깊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.

당사는 정관 제 24 조에 의하여 제 9 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 래 -

1. 일 시 : 2026 년 3 월 26 일 (목요일) 오전 9 시

2. 장 소 : (주)레이크머티리얼즈 본사

(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산단길 22-144, 사무동 대회의실)

3. 회의 목적 사항

가. 보고사항 : 감사보고, 영업보고, 감사인 선임보고,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

나. 부의안건

제 1 호 의안 : 제 9 기 별도(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(안)포함) 및 연결 재무제표 승인의 건
(현금배당 : 1 주당 30 원)

제 2 호 의안 : 정관 일부 변경의 건

제 3 호 의안 : 이사 선임의 건

제 3-1 호 : 사내이사 후보자 김진동 재선임의 건

제 3-2 호 : 사내이사 후보자 나용환 신규선임의 건

제 3-3 호 : 사외이사 후보자 홍연집 신규선임의 건

제 4 호 의안 :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

제 5 호 의안 :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

4. 경영참고사항 비치

상법 제 542 조의 4 에 의거 경영참고사항 등은 당사의 본사 및 지점과, KB 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였고, 금융감독원, 한국거래소에 전자공시하여 조회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5.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

금번 당사의 정기주주총회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314 조에 의거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대리 행사할 수 없습니다. 따라서 주주님께서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 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, 정기주주총회에 참석하시어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, 대리인에 위임하여 의결권을 간접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.

가. 직접행사: 신분증(본인)

나. 대리행사: 위임장(주주와 대리인 인적사항, 인감날인, 인감증명서), 수임인의 신분증

6.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에 관한 사항

당사는 상법 제 368 조의 4 에 따라 전자투표제도를 활용 하고 있으며, 이 제도의 관리업무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.

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.

가. 전자투표 관리시스템

인터넷 주소 : <https://evote.ksd.or.kr>

모바일 주소 : <https://evote.ksd.or.kr/m>

나. 전자투표 행사 기간 : 2026 년 03 월 16 일 오전 9 시 ~ 2025 년 03 월 25 일 오후 5 시

- 기간 중 24 시간 시스템 접속 가능(단, 마지막 날은 오후 5 시까지만 가능)

다. 인증서를 이용하여 주주 본인 확인 후 의결권 행사

-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: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(K-VOTE 에서 사용가능한 인증서 한정)

라. 수정동의안 처리 : 주주총회에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 처리

7. 기타사항

- 상법 제 542 조의 4 에 의거하여 본 공고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 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를 갈음하고자 합니다.

2026 년 3 월 11 일

주식회사 레이크머티리얼즈

대표이사 김 진 동(직인생략)

정기주주총회 위임장

대리인

성 명 :

주 소 :

주민등록번호 :

본인은 2026년 3월 26일 개최하는 ㈜레이크머티리얼즈 제 9기 정기주주총회(그 속회, 연회포함)에서 본인이 지정하는 ()을 그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다음 내용과 같이 찬반표시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위임합니다.

- 다 음 -

1. 의결권 있는 주식수: 주

2. 위임할 주식수: 주

3. 주주총회 목적사항 및 목적사항별 찬반 여부

구 분	목 적 사 항	찬 성	반 대
제 1 호 의안	제 9 기 별도(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(안)포함) 및 연결 재무제표 승인의 건		
제 2 호 의안	정관 일부 변경의 건[별첨 1]		
제 3 호 의안	이사 선임의 건[별첨 2]		
제 3-1 호 의안	사내이사 후보자 김진동 재선임의 건		
제 3-2 호 의안	사내이사 후보자 나용환 신규선임의 건		
제 3-3 호 의안	사외이사 후보자 홍연집 신규선임의 건		
제 4 호 의안	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		
제 5 호 의안	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		

4. 새로 상정한 안건이나 변경·수정 안건 등에 의결권의 행사 위임

- 주주총회 시 새로이 상정된 안건이나 각호 의안에 대한 수정안이 상정될 경우에는 대리인이 주주의 의사표시가 위 3 번 항목에서 표시된 찬반의 취지에 합치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바에 따라 의결권 행사할 것을 위임합니다.

주 주 명 : (인)

주민등록번호(사업자번호)

주 소 :

※ 본 위임장을 통한 의결권 행사시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과 수임인 신분증이 필요하며, 반드시 인감을 날인하여 주시고, 인감증명서 첨부 바랍니다.

[별첨1] 정관 일부 변경의 건

현행	개정(안)	개정이유
제 25 조 (소집지)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,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.	①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,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. ② <u>회사는 총회일에 주주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는 방식으로만 총회를 개최한다.</u>	상법제 542 조의 14 제 2 항 개정사항을 반영
제 31 조(의결권의 대리행사) ② 제 1 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(위임장)을 제출하여야 한다.	제 31 조(의결권의 대리행사) ② 제 1 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<u>서면 또는 전자문서를</u> 제출하여야 한다.	상법 제 368 조의 개정사항을 반영
제 34 조 (이사의 수) ① 회사의 이사는 3 인 이상으로 하고, 회사는 필요시 사외이사를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 분의 1 이상으로 한다. ② 사외이사의 사임,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제 1 항에서 정한 이사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.	제 34 조 (이사의 수) ① 회사의 이사는 3 인 이상으로 하고, <u>독립이사는 이사총수의 3 분의 1 이상으로 하되, 관련 법령에 따라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u> ② 독립이사의 사임,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<u>독립이사의</u> 수가 제 1 항에서 정한 이사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<u>독립이사를</u> 선임하여야 한다.	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이사회내 인원수 비율로 변경하는 상법 개정 내용을 반영
제 39 조(이사의 의무)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. ②~③ (생략)	제 39 조(이사의 의무)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<u>회사 및 주주를</u>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. ② <u>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, 전체 주주의이익을</u> 공정하게 대우하여야 한다. ③~④ (현행과 같음)	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에게로 확대한 상법 제 382 조의 3 개정내용을 반영
제 39 조의 2 (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감경) ① 이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의 상법 제 399 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 년 간의 보수액(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)의 6 배(사외이사는 3 배)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 한다.	제 39 조의 2 (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감경) ① 이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의 상법 제 399 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 년 간의 보수액(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)의 6 배(<u>독립이사는 3 배</u>)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 한다.	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는 상법 개정내용을 반영
	부칙 1 이 정관은 제 9 기 정기주주총회 (2026 년 3 월 26 일)에서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.	개정 정관 시행일 추가

	<p>부칙 2 (소집지와 개최방식 및 의결권 대리행사에 관한 경과조치) 제 25 조, 제 31 조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</p> <p>부칙 3. 제 3 조(독립이사에 관한 경과조치) 제 34 조, 제 39 조의 2, 제 35 조, 제 41 조의 2(제 4 항 및 제 7 항은 제외한다)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 29 조 제 1 항의 이사회 내 독립이사의 수는 <법을 제 20991 호, 2025.7.22> 부칙 제 2 조 단서에 따라 법률의 시행 후 1년 이내에 갖추어야 한다</p>	
--	---	--

[별첨2]

- 사내이사 후보자

성명 <생년월일>	주요약력	추천인
김진동 <1966.10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카이스트 유기금속 석사·박사 ■ 2010.05~현재 : (주)레이크머티리얼즈 대표이사 	이사회
나용환 <1974.08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공주대학교 일반대학원 화학과 ■ 2010.06~현재 : (주)레이크머티리얼즈 전무이사 	

성명 <생년월일>	회사와의 3년 거래내역	최대주주와의 관계	체납사실 여부	부실기업 경영진여부	법령상 결격사유 여부
김진동 <1966.10>	해당없음	본인	해당없음	해당없음	해당없음
나용환 <1974.08>	해당없음	해당없음	해당없음	해당없음	해당없음

- 사외이사 후보자

성명 <생년월일>	주요 약력	추천인
홍연집 <67.08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■ 前)㈜LG CNS 에너지융복합사업팀장 ■ 前)울릉도친환경에너지자립섬(주) 경영관리 본부장 ■ 前)테크윈 경영지원실장 ■ 現)테크윈 감사 	이사회

성명 <생년월일>	회사와의 3년 거래내역	최대주주와의 관계	체납사실 여부	부실기업 경영진여부	법령상 결격사유 여부
홍연집 <67.08>	해당없음	해당없음	해당없음	해당없음	해당없음